

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99호

나. 발 의 자 : 이민옥 의원 외 16명

다. 발의일자 : 2022년 10월 17일

라. 회부일자 : 2022년 10월 21일

2. 제안이유

- 「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이 2021. 6. 15.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는 2022. 2. 21. 「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을 마련하였음.
- 현행 조례는 실태조사 대상을 인증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노동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, ‘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’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.
- 이에 ‘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’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 하고, 실태조사 대상에 이들을 포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“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(안 제2조 제4호)
- 나. 실태조사의 대상에 “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“를 추가함
(안 제8조제1항)

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플랫폼이나 개인간 소개로 이뤄지는 가사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의 대상에 비공식 가사노동자(“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”)를 포함하고자 발의됨.

나. 가사노동자의 입법 배경

-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,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2022년 6월부터 「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가사근로자법”)이 제정·시행되고 있음(2021.6.15.).
- “가사근로자법”에 따르면, 가사노동자는 산재보험, 최저임금 보장, 고용유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

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함.

< 「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 관련 규정 >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가사서비스 제공기관”이란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.
4. “가사근로자”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(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,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7조(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)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.

1. 「민법」, 「상법」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
2. 고용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사근로자를 유급 근로자로 고용(고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할 것
3.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·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
4. 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
5. 그 밖에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

- 서울시 또한 「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고(2022.2.21), ▶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, ▶가사노동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·훈련 지원, ▶가사노동자에 대한 고충처리, 상담 등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하고 있음.¹⁾
- 현행 조례 역시 가사노동자의 정의를 “가사근로자법”에 따라 규정해 미인증 직업소개소나 가사플랫폼, 개인간 소개 등을 통해

1) 서울시는 2023년 2월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가사노동자에 대한 주요 사업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.

거래하는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.

- 조례 제정 당시 다양한 계약 형태가 존재하는 가사노동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사노동자를 ‘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’ 으로 폭넓게 정의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,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채택되지 않음.

< 「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2. "가사서비스 제공기관"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.
 3. "가사노동자"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(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)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이용자 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.

다. 조례의 정의 신설 및 실태조사 대상 확대

- 개정안은 조례의 정의에 ‘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’ 를 신설 하고(안 제2조제4호),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실태조사 대상에 이들을 추가함(안 제8조제1항).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“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”란 제 3호에 따른 가사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「직업안정법」에 따른 직업소개</u>

<p>제8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<u>가사노동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</u>를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<u>및 가사노동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노동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.</u></p> <p>제8조(실태조사) ① ----- ----- <u>수립 등을</u> ----- ----- <u>가사노동자 및 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</u>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-

- 전통적인 가사서비스 시장은 점차 축소되면서 플랫폼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으나, 플랫폼 기업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비공식 가사노동자는 권리보호 및 실태조사의 사각지대에 계속 남게 됨.
- 통계청의 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,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는 전국 10만 5천명, 서울시 3만 8천명 규모로 추정됨.
- 2019년 같은 조사에서는 공식부문 가사노동자는 20만~40만명, 비공식 부문까지 포함하면 최대 60만명으로 추정하는 등 조사기관별·시기별 결과가 상이함.
- 고용노동부는 2022년 6월 법 시행 후, 올해 말까지 100개소의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목표로 하였으나, 공식사이트(가사랑²⁾)에서 확인되는 인증업체는 올해 전국에 33개소(서울 12개소)에 그치고

2) <https://www.work.go.kr/gsrnMain.do>

있고 휴·폐업 중인 업체를 제외하면 실제 영업 중인 인증업체는 전국 30개소(서울 11개소)에 불과함.

- 따라서 실태조사 대상에 비공식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를 포함하는 개정안은 서울시 가사노동자 기본계획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.
- 다만 비공식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로 한정하고 있어 조사결과가 추후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과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이나 정책과 사업의 지원 대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.

담당 조사관	연락처
이성찬	02-2180-8061